

AI 시대 개인정보, 어떻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주 제 AI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일 시 2026. 11. 1.(일) 13:00 ~ 18:00

장 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KTV 유튜브 생중계)

주 최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토론회 한눈에 보기

'모두의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공론장으로, 논의가 필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AI가 발전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개인정보입니다. 쓰지 않을 수는 없고, 함부로 쓰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한 회사가 미리 정한 목적 안에서 정보를 다루는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져, AI가 여러 서비스를 오가며 일을 대신 처리하는 환경과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 잘 활용하는 방법을 국민과 함께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주요 의견

핵심 질문은 “AI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이며, 세 가지 쟁점을 토론했습니다.

쟁점① 개인정보는 어디에 쓰여야 할까요? 그때 꼭 지켜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쓰임 — 어디에 쓰이면 좋을까

조건 — 그때 꼭 지켜져야 할 것

- 일상에서 쓰이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 의료 연구, 정책 개선 등 개인정보가 쓰이는 곳을 살펴보고, 그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건을 함께 찾습니다.

쟁점② 매번 미리 물어볼까요, 알리고 언제든 멈출 수 있게 할까요?

매번 미리 동의받기

VS

미리 알리고, 원하면 멈추기

- 개인정보가 쓰이기 전에 동의하는지 묻도록 할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에서는 목적을 분명히 알리고 언제든 거부할 수 있게 할지를 사례별로 따져 봅니다.

쟁점③ '꼭 지켜져야 할 것'을 누가,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기업

정부

국민

- 기업의 책임과 보호 투자, 정부의 감독과 지원, 국민의 권리와 참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신뢰가 만들어지는지 함께 논의합니다.

모두의 토론회

AI 시대 개인정보, 어떻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참가자 사전 학습 자료

주 제 AI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일 시 2026. 11. 1.(일) 13:00 ~ 18:00

장 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KTV 유튜브 생중계)

주 최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두의 토론회'란?

'모두의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공론장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이 제시될 수 있는 정책일수록 국민의 뜻을 직접 듣고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내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지향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의 여러 쟁점 가운데 **'AI 시대의 안전한 활용과 동의·거부 체계'**에 집중합니다. 토론은 약 2 주간의 사전 온라인 토론(투표·댓글)으로 시작합니다. 토론회 당일에는 온라인 토론 결과를 함께 확인하고, 전문가 발제를 들은 뒤, 조별 분임 토론과 패널·플로어 토론을 하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모인 의견은 이후 정책 검토에 활용됩니다.

이 자료를 읽는 방법

이 자료는 토론회에 앞서 쟁점을 미리 살펴보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어느 한쪽 입장을 권하지 않으며, 주제 이해를 위한 정보와 여러 시각을 담았습니다. '현황 → 쟁점① 쓰임과 조건 → 쟁점② 의사 확인 방식 → 쟁점③ 신뢰의 보장' 순으로 읽어 보시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맨 뒤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황 — 무엇을 논의하나요?

무엇을 논의하는 자리인가요?

이번 토론은 AI 시대에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것이 좋을지, 쓰일 때 내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꼭 지켜져야 할 것을 누가 어떻게 보장할지를 함께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 개인정보,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얼굴 사진처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전화번호 뒷자리·직장·위치처럼 다른 정보와 합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동안 수많은 데이터가 쓰이고 있고, 여기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털에 로그인할 때는 아이디·비밀번호가, 기차표를 예매할 때는 이름·예약정보·결제정보가,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는 연락처·주소·주문내역이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많은 서비스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이나 의료연구,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범죄 음성 분석, 사고 예방을 위한 밀집 신호 분석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언제 쓸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는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필요하지만, 법이 정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의한 경우, 다른 법에서 처리하도록 한 경우, 내가 요청한 서비스 제공이나 계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응급·재난처럼 사람을 급히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 표와 같이 일곱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원래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추가 이용·제공도 허용합니다. 같은 정보라도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 연락처를 배송 안내에 쓰면 제 4 호, 세일 문자에 쓰면 제 1 호, 응급상황 연락에 쓰면 제 5 호에 해당합니다.

구분	쉬운 설명	생활 속 사례
제 15 조제 1 항 제 1 호	내가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경우	광고·판매 권유, 선택 기능 이용
제 2 호	다른 법에서 처리하도록 정한 경우	진료기록 작성
제 3 호	공공기관이 맡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원 처리
제 4 호	내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쇼핑 주문·배송
제 5 호	사람이나 재산을 급히 보호해야 하는 경우	응급환자 신원·연락처 확인
제 6 호	기업 등의 정당한 필요가 이용자의 권리보다 명백히 앞서는 경우	부정거래 탐지
제 7 호	감염병·재난 등 사회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재난 피해자 구조

구분	쉬운 설명	생활 속 사례
제 15 조제 3 항 제 17 조제 4 항	원래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문구 판매점이 리콜 안내를 위해 구매자 정보를 제조사에 전달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제 1 항 제 1 호~제 7 호, 제 15 조제 3 항. 이 밖에 다른 기관이나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제 17 조·제 18 조), 민감정보(제 23 조)는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시기	내용
1999 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온라인 사업자만 규율) — 동의 중심의 처리 체계 도입
2011 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동의 외에 법령상 의무·공공업무·계약 이행·급박한 이익·정당한 이익 등 다양한 처리 근거 도입(단, 계약 이행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
2020 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규정을 옮겨와 법체계 통합(온라인 사업자의 동의 중심 체계는 특례로 유지)
2023 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온·오프라인 기준 일원화, 계약 이행 근거 “불가피하게” 삭제

개별 동의 중심이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있던 체계가, 복잡다단해지는 데이터 환경을 반영하여 처리 목적과 상황별로 알맞은 근거를 적용하는 체계로 바뀌어 왔습니다.

AI 시대, 왜 다시 논의하나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매일 누르는 이 버튼의 의미가 AI 시대에는 달라집니다.

- **AI 는 데이터로 배웁니다** — AI 가 발전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상당 부분이 우리의 개인정보입니다.
- **AI 가 나 대신 움직입니다** — AI 비서에게 한 번 부탁하면 예약·주문 등 여러 개인정보 처리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AI 가 여러 회사를 대신 오가며 처리합니다.
- **합치면 더 잘 보입니다** — 흩어진 정보를 합치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기 쉬워지고, 내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취향이나 특성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목적·방식이 모두 달라져, 과거 기준으로 설계되었던 지금의 처리 기준과 부딪히는 지점이 생깁니다(쟁점② 참고).

세 가지 핵심 쟁점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AI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입니다. 이 질문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곧 안전조치를 강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이용되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정부도 보호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를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6 년 9 월 1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전제 위에서 다음 세 가지 쟁점을 함께 논의합니다.

쟁점① 개인정보는 어디에 쓰여야 할까요? 그때 꼭 지켜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쟁점② 내 정보가 꼭 필요할 때, 매번 미리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미리 알려주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게 하는 게 좋을까요?

쟁점③ 우리가 말한 ‘꼭 지켜져야 할 것’을 누가,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2 쟁점① — 어디에 쓰이고, 무엇이 지켜져야 할까요

Q. 내 삶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려면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여야 할까요? 그때 꼭 지켜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는 이런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 **기본 서비스** — 가계부 앱의 소비 기록, SNS 의 아이디·게시글
- **맞춤 서비스** — 대중교통 이용 내역으로 최저요금 계산, 운동량·수면 기록으로 건강 관리
- **공익 실현** — 재난 방지를 위한 CCTV 영상 분석
- **사회적 편익** — 보건의료 질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연구
- **더 나은 정책** — 육아휴직 이용 내역 분석을 통한 과학적 행정

쓰임을 살펴봐야 한다는 시각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기술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AI 의 품질을 높이고, 편향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에는 개인정보 처리가 함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 지점이 어디인지 국민이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을 함께 정해야 한다는 시각

같은 연락처라도 배송 안내에 쓰는지, 세일 문자에 쓰는지, 응급상황 알림에 쓰는지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무슨 정보인가”뿐 아니라 “왜,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 “어떤 상황에서 쓰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AI 환경에서는 쌓인 데이터가 반복해서 다시 쓰일 수 있어서 처음부터 모든 쓰임을 정해 두기 어렵고, 흩어진 정보를 합치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일지와 함께, 그때 꼭 지켜져야 할 조건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쟁점에서 나온 ‘꼭 지켜져야 할 것’은 쟁점③에서 다시 이어서 논의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 삶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려면 어떤 서비스에 개인정보가 쓰이면 좋을까요?
그때 꼭 지켜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3

쟁점② — 내 의사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Q. 내 정보가 꼭 필요할 때, 매번 미리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미리 알려주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게 하는 게 좋을까요?

| 하나의 서비스에도 여러 근거가 함께 쓰입니다

온라인 쇼핑 하나만 보아도 개인정보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근거로 처리됩니다.

처리 장면	처리 목적	처리 근거
회원가입·결제·배송·반품·환불	주문한 서비스 제공	내가 요청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거래기록 보존·통관 신고	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	다른 법에서 처리하도록 정한 경우
부정거래 탐지	이용자와 서비스 보호	기업 등의 정당한 필요가 이용자의 권리보다 명백히 앞서는 경우
신체 사이즈 기반 추천	이용자가 선택한 추가 편의 (서비스 전체에 필수는 아닌 부가기능)	내가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경우
세일 소식 받아보기	광고·혜택 안내	내가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경우

| 이런 경우, 동의가 필요할까요?

사례	상황
① AI 비서의 옷 검색	“가을 옷 추천해 줘”라고 했을 때, AI가 전에 알려 준 키·체형 정보를 외부 검색 서비스에 함께 보낼 때
② 서비스 개선과 AI 개발	쇼핑몰이 고객들의 이용 내역을 분석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사 AI 기능을 개발할 때
③ 중고거래 피해자의 정보 요청	중고거래 앱에서 송금했는데 판매자가 잠적해, 플랫폼이 피해자에게 판매자 정보를 알려주려 할 때

AI 환경에서는 무엇이 부딪힐까요?

구분	지금의 처리 기준이 전제된 환경	AI 환경
처리하는 주체	한 회사가 자기 목적으로, 또는 자기 책임 아래 맡겨서 처리	AI 모델 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외부 도구가 동시에 관여
쓰는 목적	서비스마다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모으고, 목적을 달성하면 삭제	쌓인 데이터를 반복해서 다시 쓰고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쓰임을 정해 두기 어려움
처리하는 방식	회사가 정해 둔 입력 칸에 정해진 정보를 입력 (아이디, 주소, 계좌번호 등)	AI 대화 등 자유롭게 말하고 쓴 내용 포함, 영상·음성·행동에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짐

이야기로 살펴보는 세 가지 충돌 지점

A 씨는 AI 비서에게 “점메추(점심 메뉴 추천)”를 부탁했습니다. AI 는 날씨와 위치를 살펴 근처 칼국수집을 추천했고, A 씨가 “A 칼국수 예약해 줘”라고 요청합니다.

첫 번째 충돌 — 내가 부탁한 일인데 왜 또 묻나요?

AI 가 나의 성별과 연령대, 내가 어제 먹은 메뉴를 기억하고 메뉴를 추천하는 것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로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내 위치에 대한 정보를 보내서 날씨를 알아보거나 근처 식당을 검색할 때, 이름·전화번호를 예약 플랫폼이나 식당에 넘길 때는 별도 근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 충돌 — 내가 부탁하지 않았지만 회사에 필요한 일은요?

AI 가 ‘점메추’는 ‘점심 메뉴 추천해 줘’를 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인터넷상 사용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글, 서비스 이용내역,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등을 AI 학습에 써도 될까요?

회사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정당한 목적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법에서는 ‘정당한 이익’이라 하고, 그 이유와 이용자의 권리를 저울에 달아 보는 절차를 ‘이익형량’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보를 쓰는 회사의 필요만 근거로 인정하고 그 필요가 이용자의 권리보다 ‘명백히’ 앞서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지만, EU 는 다른 정보주체 또는 다른 기업(제3자)의 필요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각각의 이익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세 번째 충돌 — AI 가 나 대신 ‘동의’ 버튼을 눌러도 될까요?

AI 가 예약 플랫폼을 통하여 식당으로 내 정보를 보내려면 정해진 동의 양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양식을 AI 비서가 나에게 보여주지 않고 대신 동의했다면, 이것을 내 동의로 볼 수 있을지도 새로 생긴 질문입니다.

참고: 해외 사례

구분	우리나라	EU	미국(주법)	일본
요청한 서비스에 꼭 필요한 정보 제공	같은 목적이더라도 다른 기관에 보낼 때 별도 근거 (동의 등) 필요	같은 목적이라면 기존 계약을 근거로 동의 없이 처리 가능	별도 사전동의 불필요, 목적·범위는 고지	계약 이행에 꼭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가능 (2026 년 개정)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는 범위	- 회사 자신의 필요만 인정 - 이용자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 필요	- 제 3 자의 필요도 인정 - 양측 이익을 종합 비교해 판단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별도 근거 없음. 미리 정해 알린 이용 목적 범위에서는 동의 없이 이용 가능

※ 동의 외 처리근거를 중심으로 단순화한 비교이며, 국가별 세부 요건은 다릅니다. 어느 쪽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푸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참고자료입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두 가지 시각

개인정보가 꼭 필요할 때 내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매번 미리 동의받아야 한다는 시각

내 정보를 쓰거나 다른 곳에 보내기 전에, 내가 매번 내용을 보고 허용할지 직접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각은 쓰이기 전에 선택할 기회가 있어야 권리가 실제로 지켜진다고 봅니다. 내 정보의 쓰임을 스스로 정할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를 가장 엄격하게 이행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정보주체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특히 AI 학습의 경우, 나중에 거부하더라도 이미 학습된 모델에서 내 데이터의 영향만 골라 지우는 기술(머신 언러닝)이 아직 불완전하고, 거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알림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이 쓰일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명시적 동의나 충분한 가명처리 없이 개인정보를 AI 학습 등에 쓰는 데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리 알리고, 원하면 멈출 수 있게 하자는 시각

법적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에서는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알리고 이용하되,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거부할(멈출)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각은 동의를 자주 받는 것이 곧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 화면이 반복되면 내용을 읽지 않고 형식적으로 누르게 되고, 동의를 한 번 더 받는다고 이용자가 더 잘 이해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단계마다 동의를 확인하는 부담을 줄이고 꼭 필요할 때만 확인하게 합니다. EU 와 미국 등도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처리는 사전 동의 대신 계약이나 고지를 근거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적이 정당한지, 꼭 필요한 범위인지,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지를 엄격히 따지고 그 판단에 책임지는 처리여야 합니다.

토론의 전제 — 맞춤형 광고·마케팅과 민감정보는 어느 방식이든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를 유지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각 사례에서 미리 동의받을지, 분명하게 알리고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게 할지 함께 따져 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 정보가 꼭 필요할 때, 매번 미리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미리 알려주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적절할까요?
- 동의가 너무 많아 읽어보지 않는다면? 미리 알림을 못 봤거나 멈추는 절차가 어렵다면?

4 쟁점③ — 신뢰는 누가, 어떻게 만들까요

Q. 우리가 말한 ‘꼭 지켜져야 할 것’을 누가,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는 ‘동의냐 비동의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정부·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쟁점①에서 함께 찾은 ‘꼭 지켜져야 할 것’이 실제로 지켜지려면, 서비스를 만드는 단계, 개인정보를 쓰거나 다른 곳에 넘기는 단계, 유출 등 문제가 생겼을 때로 나누어 각각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책임 있게 다루고
보호에 투자하기

정부

엄정하게 감독하고
보호를 지원하기

국민

내 권리를 알고
함께 보호하기

기업의 역할

- **책임 강화** — 데이터 처리 체계의 구조적 개편, 대표자(CEO) 중심 책임경영 확립
- **보호 역량 제고** — 보호 투자(인력, 예산) 확대,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보호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설계(PbD) 확대

정부의 역할

- **엄정한 감독** — 제재 수준 강화, 국민 피해구제 및 권익 증진, 대표자(CEO) 책임 강화
- **보호 지원** — 사전 실태점검, 인증·평가 체계 강화, 위험 비례 보호체계 도입 추진 등

(참고)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보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향	주요 내용
위험을 미리 찾아 개선	국민생활 밀접 분야 정기·수시 실태점검, 공공부문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평가·인증을 통한 보호수준 점검
투자 확대와 책임 강화	CEO-CPO 책임 강화, 예방투자의 제도적 유도, 중소기업 보안 지원
조기 탐지와 신속 회복	이상징후 신속 탐지,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조기 통지, 피해 확산·재발방지 대책
중대한 유출에는 엄정 대응	반복·대규모 유출에 실효적 제재, 신고·통지 지연 시 과징금 가중, 피해구제와 권익 보호 강화

국민의 역할

- 내 정보의 삭제·거부·설명을 요구할 권리 이해 증진
-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 확대
- 촬영물 유포 등 일상 속 권리침해 방지 문화 확산, 신고포상 등 국민에 의한 감시 강화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말한 '꼭 지켜져야 할 것'을 누가,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 쟁점①에서 나온 '꼭 지켜져야 할 것' 가운데 기업이 먼저 책임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정부의 감독과 지원은 어디까지 필요할까요?
- 국민이 내 정보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권리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5

붙임: 참고자료

알아두면 좋은 용어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합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

처리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저장·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일

정보주체 —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주인인 사람

동의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근거 가운데 하나

제 3 자 제공 — 개인정보를 가진 회사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회사(제 3 자)에 개인정보를 보내는 것

정당한 이익 — 회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정당한 목적과 필요가 있는 경우

이익형량 — 회사의 정당한 이유와 이용자의 권리를 저울에 달아 따져 보는 절차

처리정지 요구권 — 내 개인정보 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개인정보 보호법」 제 37 조)

민감정보 — 건강, 정치적 견해 등 새어 나가면 정보주체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법이 따로 엄격하게 다루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 23 조)

가명처리 —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바꾸는 것.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이면 동의 없이 쓸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 28 조의 2)

AI 에이전트(AI 비서) — 나 대신 예약·주문·검색 등 다양한 요청사항을 알아서 수행해 주는 AI

개인정보 보호 기본설계(PbD) — Privacy by Design.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것

ISMS-P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

발제문·자료 출처

- 김도승(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을까?」
- 김병필(AI 프라이버시 민관협의회 개인정보 처리 분과장,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AI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쓸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2026. 8.)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148 쪽),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개선(201 쪽), PET 기술개발·중소기업 지원(215 쪽), PbD 시범인증 확대 및 제도화(222 쪽), ISMS-P 인증(274 쪽),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277 쪽)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 조, 제 15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22 조, 제 23 조, 제 28 조의 2, 제 37 조

모두의 토론회 사전 온라인 토론 참여

이번 토론회는 소통혁신 24 '모두의 토론회' 사전 온라인 토론(2026. 10. 15. ~ 10. 29.)과 함께 진행됩니다.

QR 코드 또는 아래 링크로 접속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토론회 당일 공유됩니다.

sotong.go.kr/moduTalk/onlineSurvey.do?debate_id=53e4c7ad19fb4674a9804c7921e77583

토론회 당일 생중계: KTV 유튜브 · 2026. 11. 1.(일) 13 시~18 시



온라인 토론 QR